

RIS 부산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 지침

제정 2023. 11. 24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부산지역혁신플랫폼사업 운영 규정」 제13조에 의하여 대학교육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RIS 부산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(이하 “본부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교육혁신 계획 수립·추진 총괄
2. 참여대학 교육체제 분석 및 교육혁신 프로그램 개발
3. BITS 공유대학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
4. BITS 공유대학 융합전공 및 교육과정 운영
5. 대학교육혁신 추진 점검·관리 및 성과평가
6. 본부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·운영
7. 본부 예산편성·집행·결산
8. 그 밖에 대학교육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지침은 본부의 조직, 인사, 운영 등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4조(본부장 및 부분부장) ① 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분부장을 두며, 총괄운영센터장의 추천으로 주관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주관대학의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분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, 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분부장이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조직 및 전담인력) ① 본부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교육혁신 기획팀, 교육혁신 운영팀, 교육혁신 지원팀을 두며 필요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교육혁신 기획팀은 아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본부 사업기획 및 공유대학 발전계획 수립
2. BITS 공유대학 교육과정 개발(융합전공, 교양, 비교과)
3. 대학 교육혁신전략 고도화 연구

4. 본부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
5.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획·연구 관련 업무
- ③ 교육혁신 운영팀은 아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 1. BITS 공유대학 융합전공 신설 및 교육과정 운영
 2. BITS 공유대학 학사 운영 및 학적 관리
 3. 본부 예산편성, 집행 등 회계·사무 관련 업무
 4. 교육혁신 기자재 및 공간구축
 5.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운영·관리 관련 업무
- ④ 교육혁신 지원팀은 아래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 1. BITS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및 관리
 2. BITS 공유대학 온라인 강좌 개발 및 관리
 3. BITS 공유대학 홍보 및 학생 모집
 4. BITS 공유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
 5. 교육성과 관리 및 성과 확산·환류
 6. 대학별 교육혁신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지표 관리
 7.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평가·성과 관련 업무
- ⑤ 각 팀별 전담인력으로 팀장, 연구인력(계약교수, 연구원 등), 사무원 등을 두고 인력 채용·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

제6조(위원회 구성 및 기능) ① 사업 추진 과정 점검과 성과 관리를 위하여 본부 산하에 교육과정 위원회, 교육혁신운영위원회, 교육혁신평가위원회를 두며 세부 사항은 「대학교육혁신본부 소관 위원회 운영 지침」에 따른다.

-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BITS 공유대학 교육과정의 설계·편성
 2.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
 3. 그 밖에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교육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본부 사업의 기획 및 주요 운영 계획
 2. 본부 규정 및 지침의 제·개정
 3. 본부 예산의 편성 및 결산
 4. BITS 공유대학 학생 선발·지원·관리 등 학생 관련 제반 사항
 5. BITS 공유대학 전공·트랙·마이크로디그리 등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
 6. 그 밖에 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
- ④ 교육혁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1. 자체평가 계획 및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검토
 2. 연차별 대학교육혁신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

3.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평가 및 질 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장 사업비 관리

제7조(사업비 집행 및 관리) 본부의 사업비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「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과 총괄운영센터에서 수립한 「부산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기준」에 의거 집행·운용한다.

제8조(예산 조정) 이 지침에서 명시한 것 외에 별도의 예산편성·집행이 필요한 경우, 교육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장 보 칙

제9조(지침 개정) 이 지침 제정 후 개정이 필요할 경우 부산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